



제429회 국회 (정기회)
제6차 환경노동위원회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〉
■ 김형동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1033호)

2025. 11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전문위원 한석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	2

I. 제안경위

2025년 7월 30일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에 따르면,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,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(73.2%)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.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.

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).

Ⅲ. 검토의견

1.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국인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(안 제31조의 2 등)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31조의2(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(이하 “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”이라 한다)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제1항

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
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
단 및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
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
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한다.

③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
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
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
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
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외국인
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
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
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
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
수 있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
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
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
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
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
육의 시간·내용 및 방법, 그 밖
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

제175조(과태료) ① ~ ④ (생략)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15조제1항, 제16조제1항, 제17조제1항·제3항, 제18조제1항·제3항, 제19조제1항 본문, 제20조제1항 본문, 제24조제1항·제4항, 제25조제1항, 제26조, 제29조제1항·제2항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<u>제31조제1항</u>, 제32조제1항(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), 제37조제1항, 제44조제2항, 제49조제2항, 제50조제3항, 제62조제1항, 제66조, 제68조제1항, 제75조제6항, 제77조제2항, 제90조제1항, 제94조제2항, 제122조제2항, 제124조제1항(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), 제125조제7항, 제132조제2항,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. ~ 16. (생략) ⑥·⑦ (생략)	<u>으로 정한다.</u> 제175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 31조제1항, 제31조의2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~ 16. (현행과 같음) ⑥·⑦ (현행과 같음)
--	---

나. 검토의견

현행법은¹⁾ 외국인근로자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[채용 시 교육 개관]

구 분	교육시간	교육내용
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	1시간 이상	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(화재·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	4시간 이상	◦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◦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◦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◦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◦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◦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◦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◦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◦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◦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그 밖의 근로자	8시간 이상	

또한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입국 후 15일 이내에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

1)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周知)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²⁾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직후 사업장 이동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별도의 취업교육기관에서³⁾ 안전표지, 안전일반 및 업종별 작업안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5시간 이수하고 있음.

그러나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서 숨진 23명의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18명에 달하였고,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 산업안전감독 결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,⁴⁾ 외국인근로자 중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지 않아 취업교육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가⁵⁾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.

개정안은 채용 시 교육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때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강화하고, 정부가 통역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데 입

2) 제11조(외국인 취업교육)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(周知)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(이하 “외국인 취업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,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3) 중소기업중앙회(제조업 등), 농업협동조합중앙회(농축산업), 대한건설협회(건설업) 등

4)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 결과(2024. 8. 13)

5) 특히 거주(F-2) 체류자격으로 취업을 한 외국인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

법의 의의가 있음.

고용노동부는 전반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하나, 교육 실시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⁶⁾

문 의 처
02)6788-5545

6) 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” → 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”